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72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조지연 · 박형수 · 김기웅
김은혜 · 서일준 · 박수영
신동욱 · 김위상 · 박준태
이양수 · 김정재 · 임이자
김상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풍력발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사
제50조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 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풍력발전설비”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제20조(적합명령) ----- ----- ----- ----- ----- ----- -----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② (생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수료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4. (생 략) ③ (생 략) 제50조(벌칙) <u>제11조에</u> 따른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52조(과태료) <u><신 설></u> ①·② (생 략)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2의2. 제11조의2제1항에</u> 따른 <u>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사</u>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u>제11조, 제11조의2-</u> ----- ----- -----. 제52조(과태료) ① <u>제20조에</u> 따라 <u>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u> <u>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u> <u>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u> <u>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